결　　정

2018 - 2001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1. 한겨레　　발행인　양　상　우
2. 스포츠서울 발행인　유　지　환
3.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4. 스포츠동아 발행인　송　영　언
5. 일간스포츠 발행인　홍　성　완
6. 朝鮮日報　발행인　홍　준　호
7.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
8. 東亞日報　발행인　임　채　청
9.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10.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

주　　문

한겨레 2017년 12월 4일자 11면「강원도 횡성 덕고산에서 자란/기다리고, 기다리던 9~10년근 산양삼!」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 12월 5일자 18면「강원도 횡성 덕고산에서 자란/기다리고, 기다리던 9~10년근 산양삼!」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12월 5일자 26면「강원도 횡성 덕고산에서 자란/기다리고, 기다리던 9~10년근 산양삼!」제목의 광고, **스포츠동아** 12월 6일자 9면「강원도 횡성 덕고산에서 자란/기다리고, 기다리던 9~10년근 산양삼!」제목의 광고, **일간스포츠** 12월 6일자 7면「강원도 횡성 덕고산에서 자란/기다리고, 기다리던 9~10년근 산양삼!」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12월 6일자 B4면「강원도 횡성 덕고산에서 자란/기다리고, 기다리던 9~10년근 산양삼!」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 12월 8일자 11면「강원도 횡성 덕고산에서 자란/기다리고, 기다리던 9~10년근 산양삼!」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12월 12일자 B5면「강원도 횡성 덕고산에서 자란/기다리고, 기다리던 9~10년근 산양삼!」제목의 광고, **매일경제** 12월 13일자 A28면「강원도 횡성 덕고산에서 자란/기다리고, 기다리던 9~10년근 산양삼!」제목의 광고, **경향신문** 12월 21일 19면「강원도 깊고 깊은 산속에서 자란/기다리고, 기다리던 9~10년근

산양삼!」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위 10개지의 적시 광고에서 선전하는 산양삼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자연식품이다.

그런데도 광고는 제목에 「암, 혈압, 당뇨 잡는 강원도 산양삼」라고 적시해 마치 산양삼이 이들 질환에 대한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또 간질환 노화방지 위장병 류머티즘은 물론 항암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선전해 만병통치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 광고는 식품과 관련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제13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인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년 1월 10일

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

위 원 장 김 용 담

위 원 정 숭 호

장 명 국

이 동 현

장 인 철

강 희

김 영 모

박 현 갑

박 미 경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

(4)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나 어떠한 허점을 악이용한 것